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14,620,266	24,438,608
일반회계	681,817,521	20,454,526
특별회계	132,802,745	3,984,082
공기업특별회계	33,825,943	1,014,77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159,962	94,7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665,981	919,979
기타특별회계	98,976,802	2,969,30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165,467	424,964
주택사업특별회계	3,137,873	94,13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954,908	118,6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9,000	57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628,864	48,866
교통사업특별회계	5,593,875	167,81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6,479,106	1,694,37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2,957,709	388,73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26,76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